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기업지원과】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6.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성과분석지표인 일몰제 도입과 기금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4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 기간 : 2016년 4월 11일 ~ 2016년 5월 2일(22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나. 규제관련협의사항 : 의견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경제실 기업지원과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기업지원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업지원과장 김재의
	팀장 직위·성명	기업지원팀장 이문표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오병숙 (790-507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